

# 조선시대 대중국(對中國) 외교와 정문(呈文)의 활용

---

김동건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sky200106@hanmail.net

---

- I. 머리말
  - II. 정문(呈文)의 형식과 제출 방식
  - III. 정문의 의미와 활용 양상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5864).

## I. 머리말

---

조선에서 중국(明·淸)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외교 관계의 정립과 유지가 목적이었다. 조공(朝貢)-책봉(冊封)의 체제 내에서 최대한 조선의 이익을 꾀하고 원만한 외교 관계의 지속을 꾀하였다. 중국과의 외교 절차는 문서로 진행되었다. 중국에 보내는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의 작성은 당대 최고의 문인이 작성하였고, 여러 차례의 사대(查對)를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글자 하나로도 국격이 손상되거나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극히 신중을 기하였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기 전에 조선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① 외교목표 설정, ② 사행명칭 설정, ③ 사행원 구성, ④ 사행시기 설정으로 나뉜다.<sup>1</sup> 출발한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면 표자문을 제출하고 중국 측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대문서는 표문(表文)·전문(箋文)·장문(狀文)·자문(咨文)·주문(奏文)·계문(啓文)·신문(申文)·정문(呈文)·단자(單子)의 9종으로 확인된다.<sup>2</sup>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은 청나라와 조선의 조공-책봉 관계가 해체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북경에 도착한 사신들이 표문 및 자문 등을 제출하고 난 뒤에 책봉(冊封)·변무(辨誣)·사은(謝恩) 등 사행 목적에 따른 관련 문서의 회답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오해를 해소하고 상황 해결을 위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를 정문(呈文)이라는 문서로 진행되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로서 정문(呈文)은 백성이 관청에

---

1 김경록,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錄」, 『한국문화』 38집(2006).

2 이선홍, 「朝鮮時代 對中國 外交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올리거나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가리킨다. 실록에는 여러 기관에서 정문이 올라왔다는 기사나, 의정부에서 하급 기관의 정문을 인용하면서 상급 기관이나 임금에게 보고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sup>3</sup>

외교문서로서 정문은 사신이 사행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국의 각 아문(衙門) 및 관원(官員)에게 제출하는 사행문서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왕 명의를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로, 외교문서의 명칭과 작성주체, 내용 및 수량 등을 증빙한다.<sup>4</sup> 예물총단(禮物總單)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행이 출발하기 전에 승문원(承文院)에서 작성한 뒤 가지고 가서 중국 예부(禮部)에 전달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 파견된 조선 사신이 현지에서 예부를 비롯한 여러 아문이나 관원에게 외교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통칭한다. 정문에는 표문이나 자문에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중국 측에 알려 협조를 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나 조선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정문을 지어 제출했다. 따라서 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신이 중국 현지에서 행하였던 가장 실질적인 외교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문과 유사한 문서인 신문(申文)도 있다. 정문이 중국 현지에서 있는 사신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신문은 발신자가 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의정부의 영의정(領議政)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문은 국왕의 홍서(薨逝)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국왕의 부재 시에, 영의정의 주도로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현존하는 문서의 양도 정문에 비하면 상당히

---

3 실록에서 언급되는 公文은 '문서를 올린다'는 동사적 의미로 사용된 사례도 많으므로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4 김경록, 앞의 논문, 192쪽 참조.

적은 편이다.<sup>5</sup> 그에 비해 정문은 사신의 명의로 중국 아문이나 아문을 대표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양국 관계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없다면, 사신은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서 국왕의 문서를 전달하고 북경에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면 될 뿐이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신에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권이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예기치 않게 필요한 비용이나 뇌물 등에 쓰기 위한 불우비은(不虞備銀)과 공용은(公用銀)을 준비해가기도 했다.<sup>6</sup> 사신은 새로이 즉위하는 왕의 인준을 받는 문제나 세자의 책봉 등, 부여된 외교 목적을 반드시 완수해야 했다. 이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미의 정치적 관심사였다.<sup>7</sup>

정문은 반드시 중국 현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정문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문제를 사행을 떠나기 전, 조선 조정에서 논의하고 미리 작성해두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문의 작성을 온갖 핑계를 대며 서로 미루느라 임금 앞에서 신하들끼리 옥신각신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보인다.<sup>8</sup> 그 외에 조선에 온 중국 측 칙사에게 접반사 등이 제출하는 정문도 있다.

정문으로 인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탄장(彈章)이나 벌은(罰銀)을

---

5 『典律通補』, 〈申文〉. “申文[作帖字樣同咨文] 朝[平行]鮮國議政府領議政姓名等謹申爲某事云云爲此合行具申伏請照[平行]議轉奏[三行]施行瀆至申者右[平行]低三字申[間]五字禮[與右字齊]部[與申字齊]年[平行]號幾[印]年某月某日[年號左旁低一字書某事]”

6 『萬機要覽』, 「財用篇」, 〈不虞備〉. “每使行, 管餉·運餉庫丁銀各五百兩, 以不虞備帶去, 若有事取用則狀聞會減, 否則還納.”

7 김일환, 「李健命의 奏請 사행(1721~1722)과 『寒圃齋使行日記』」, 『동아시아문화연구』 58집(2014), 181~212쪽; 손성욱, 「王世子 冊封으로 본 淸·朝 관계(康熙 35년~乾隆 2년)」, 『동양사학연구』 146집(2019).

8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1월 28일 기사.

요구받는 모욕적인 사태도 발생했다.<sup>9</sup> 1677~1696년 사이에 벌은 요구는 11차례나 벌어졌는데, 부여되었던 벌은 대부분 납부가 면제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가 나라와 임금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sup>10</sup>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따라 막중한 책임이 따랐던 만큼, 정문은 쉽게 작성하기 어려웠으며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였다. 특히 현지의 상황에 따라 사신의 적절한 판단하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으며 잘못 제출했다가 과직당하는 사례도 다수 보인다. 하지만 정문을 통해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었던 사례도 많다. 정문은 사신의 외교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한 문서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정문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과 제출하는 조건 등을 확인하고 정문을 활용하는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정문(呈文)의 형식과 제출 방식

외교문서로서의 정문은 국왕 명의를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는 ‘정(呈)’이라는 문서와 중국에 파견된 조선 사신이 현지에서 예부를 비롯한 여러 아문이나 관원에게 외교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나뉜다고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정문은 후자의 것이다.

9 『중종실록』, 중종 24년(1529) 6월 9일, 4번째 기사.

10 김창수, 「17~18세기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과 조선·청 관계 구조」, 『조선시대사학보』 88집(2019), 87~88쪽 참조.

중국 현지에서 조선 사신이 양국 간 외교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때 예부 등의 아문이나 관원에게 정문을 제출하였고, 중국 측 아문에서 조선의 외교문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문의 사항이나 별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할 때도 정문을 제출하였다. 중국 현지에서는 정문을 통해 외교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광의(廣意)의 외교문서로 판단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정문의 형식과 실제 제출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문(呈文)'이라는 원문을 실제로 정문을 제출하는 경우와 그 외의 간단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오역도 종종 보인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정문을 제출하는 최종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다만 이봉(李尙)의 정문 때문에 고쳤다면 말할 것 없지만 만일 고치지 않았다면, 성절사(聖節使)가 반드시 정문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신을 보내 주청하였다가 불행히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르게 여기는 의논이 있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문은 사신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고, 주청사(奏請使)는 국왕이 보내는 것이다. 이번에 주청하였다가 전처럼 탄장을 받게 된다면 곤란해지지 않겠는가? 주청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뜻은 이러하다. 대신들에게 문의해 보라.<sup>11</sup>

1529년 중종이 중국의 역사서 등에 조선의 종계(宗系)가 잘못 기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탄장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처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조선에서는 사신을 보내기 전에 발생 가능한 변수를 따져보았다. 위의 사례를 통해 정문의 제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였음을

---

11 『중종실록』, 중종 24년(1529) 6월 9일 3번째 기사.

표1-1587년(선조 20) 배삼익의 정문<sup>12</sup>

|    |  |
|----|--|
| 1면 | <input type="checkbox"/> 朝鮮國差來陪臣吏曹參判裒三益等謹呈爲懇乞<br><input type="checkbox"/> 先印會典內本國項下改纂文字等卷<br><input type="checkbox"/> 宣諭<br>聖旨給付事先該萬曆拾貳年陪臣工曹參判黃廷或<br>欽奉<br>勅諭小國宗系惡名等事已蒙昭雪<br><input type="checkbox"/> 許令詳錄   |
| 2면 | 成命一下舉國咸鞫固已感激於<br>天覆海涵之仁矣第未知刊印<br>第未知刊印<br><input type="checkbox"/> 頒布的任何時君臣上下翹跂西望廢食忘寢者亦有年矣茲者三益等爲因陳<br><input type="checkbox"/> 謝句當蒙國王差遣前到<br><input type="checkbox"/> 京師聽得前項正藁已經<br>乙覽允下於本年貳月是誠千載一時也賚送之<br>勅丁寧在耳印  |
| 3면 | <input type="checkbox"/> 頒之<br>恩指日可待矣三益等竊念此書之<br><input type="checkbox"/> 頒其在<br><input type="checkbox"/> 朝廷則非朝夕汲汲之事而其在小邦則實係神人日夜之願望今此陪臣之來寡君以陳<br><input type="checkbox"/> 謝爲重雖不敢并舉而其欲速見成書者庸有極乎今者纂輯就緒鳩工鏤梓刊布之期非朝則夕<br>如此而又未得成書<br><input type="checkbox"/> 歸報寡君則寡君之悶鬱爲如何哉不惟寡君之悶鬱抑亦寡君先祖之靈悶鬱於冥冥中矣<br>伏望<br><input type="checkbox"/> 閣下仰體 |
| 4면 | 皇上之至仁俯察小邦之危懇陪臣瀝血之辭<br><input type="checkbox"/> 曲垂採納善爲轉<br><input type="checkbox"/> 達先將會典新書係于本國事項若干卷<br>特許逐一刊印仍撰<br>勅以宣德意使寡君先萬國而得見則是<br>皇朝屢世伸枉之典特施於<br>聖明之時而下國數百年被誣之寃得雪於寡君之身事機之會實亦有待於今日也一國君臣感荷  |
| 5면 | 寵靈天地父母豈止再造邦家而已三益等不勝惶恐懇祈之至爲此謹呈  |
| 6면 | 案, 候書成刊布之日<br>題請施行<br><input type="checkbox"/> 萬曆拾伍年陸月 (十七日)   |

알 수 있다. '정문은 사신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고, 주청사는 국왕이 보내는 것이다.'라는 중종의 발언에서 정문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전율통보(典律通補)』에는 정문의 기본적인 형식이 정리되어 있다.<sup>13</sup> 앞부분은 '조선국차래배신(朝鮮國差來陪臣)과 '근정(謹呈)'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역시 '근정(謹呈)'으로 한 뒤에 날짜를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엄격한 격간법(隔間法)을 지켜야 했다. 정문의 경우 문서 끝부분에 인장(印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기에, 정문을 '무인문(無印呈)', 혹은 '백두정문(白頭呈文)'으로 부르기도 한다. 위의 표에 1587년(宣祖 20) 6월 진사사(陳謝使)로 명나라에 갔던 배삼익(裵三益) 등이 지은 정문을 원문의 각 면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배삼익의 정문은 명나라 예부에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현재까지 실물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종계변무 문제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실려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조선에서는 개국 초부터 선조 때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 명나라 측에 수정을 요청하여 1588년에 이르러서야 수정된 『대명회전』을 가지고 오기에 이르렀다.<sup>14</sup>

12 慶尙北道 安東市 臨北面 道木里 裵淵載 所藏. 이선흥의 앞의 논문, 119쪽에서 재인용. 원문의 '□'은 격간 표시이며, 가로로 원문을 가로로 배열하였기에 의도치 않은 줄바꿈이 있다. 또한 6면의 내용은 청 예부에서 문서를 처리하고 정문을 되돌려주면서 기입한 내용이다.

13 『典律通補』, 〈呈文〉. “呈文[作帖字樣比申文差大] 朝[平行]鮮國差來陪臣職姓名等呈[平行]云云右[平行低二字]謹[間二字]具[間二字]呈[間二字]年[平行]號幾年某月某日朝鮮國差來陪臣職姓名等”

14 권인용, 「明中期 조선의 宗系辨誣와 對明外交: 권벌의 『朝天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4권(2005) 참조.



위의 정문은 새로 간행될 『대명회전』에서 태조의 선계(先系)에 관한 내용이 수정된 권질(卷帙)을 우선 간인(刊印)하여 사행이 귀국할 때에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해당 문서의 원본에는 예부에서 조선 사신의 요청을 황제에게 올렸고 이를 허락하였다는 제문(題文)〔案, 候書成刊布之日, 題請施行.〕과 문서를 처리한 날짜(1587년 6월 17일(음력))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sup>15</sup>

배삼익의 사행 기록이 「조천록(朝天錄)」에 남아 있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행의 목적은 1586년(선조 19) 명나라에 갔던 하성절사(賀聖節使) 윤자신(尹自新)과 하동지사(賀冬至使) 성수익(成壽益)이 회동관(會同館)에서 실화(失火)로 불을 내어 명 조정으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죄를 청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6</sup> 하지만 기록에 보이는 배삼익의 모습은 실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왕의 주본(奏本)을 제출하여 용서를 받았고, 황제의 표창과 함께 망룡의(蟒龍衣)를 하사받기도 하였기 때문이다.<sup>17</sup>

6월 12일 배삼익은 주사(主事) 양식(楊植)을 만나 인사한 뒤 정문과 관련된 일로 표첩(票帖)을 청하였고, 회동관에 불을 냈던 문제로 시행되었던 화금(火禁)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sup>18</sup> 사행의 주목적이었던 실화 문제의 해결은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을 뿐이다. 6월 14일에는 통사(通事) 곽지원(郭之元)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뿐 아니라 김해(金海)·권후(權翹)·임춘기(林春起) 등과 서장관 원사안(元士安)의 노비 풍년(豐年)도 연이어 사망하는

15 예부에서 제출한 정문을 처리한 뒤에 문서의 실물을 되돌려주었다. 아울러 본고에서 언급된 모든 날짜는 음력이며, 이후로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16 『선조실록』, 선조 20년(1587) 3월 13일 1번째 기사.

17 『선조실록』, 선조 20년(1587) 9월 13일 1번째 기사.

18 裴三益, 『臨淵齋集』, 「朝天錄」. “庚午晴. 行再拜禮於主事, 以呈文事請票帖. 又乞弛火禁.”

등 참혹한 상황이 이어졌다.<sup>19</sup> 이는 오는 길에 지났던 동팔참(東八站) 지역에서 전염병이 번지면서 일어난 사태였는데, 당시 중국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6월 20일, 예부에 정문을 올린 지 이미 6일이 지났는데 어떤 처치가 내렸는지 모르겠으니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였다.<sup>20</sup> 그러던 중 6월 24일에 드디어 예부에서 ‘책이 완성되는 것을 보아 간행 배포되는 날에 제청(題請)하여 시행하겠다.’는 제문(題文)이 내려왔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원본 정문에 실린 내용과 날짜가 동일하다.<sup>21</sup>

사행기록을 살펴보면, 배삼익은 사행의 원래 목적보다는 정문을 통해 중계변무를 해결하려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압록강을 건너며 선조에게 보낸 도강장계(渡江狀啓)에서는 수정된 『대명회전』의 간행이 시작되었고, 그 정고(正稿)를 등서(謄書)하여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선조는 모화관에 까지 마중 나와 귀국하여 복명하는 사신 일행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위 문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뿐 아니라 배삼익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720년 6월 8일 숙종이 승하하여 동지사겸정조성절진하사의 정사로 사행을 간 이의현(李宜顯)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의현이 북경에 도착하자 ‘나라에 상고(喪故)가 있어 상마연과 하마연 등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예부에서는 ‘[비록 임금의 상사가 있더라도] 100일이 지난 뒤에는 으레 잔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19 裴三益, 『臨淵齋集』, 「朝天歸渡鴨綠江啓」. “到玉河館, 或五六人, 或七八人, 連臥不絕. 因此通事郭之元, 金海, 權誼, 林春起等及書狀官元士安奴豐年相繼身死, 極爲矜慘.”

20 裴三益, 『臨淵齋集』, 「朝天錄」. “戊寅陰雨晚晴. 呈文禮部, 今已六日, 未聞處置如何, 不勝憂憫.”

21 裴三益, 『臨淵齋集』, 「朝天錄」. “壬午晴. 禮部呈文題始出, 而日案候書成刊布之日, 題請施行云. 乃十七日題也. 是夜雨.”

또 황제의 즉위 60년을 경하를 드리는 일이니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황제의 사은을 해야 한다고 쪽으로 합의되었다.<sup>22</sup> 이처럼 숙종의 상고라는 조선의 입장과 강희제(康熙帝)의 경사(慶事)라는 중국의 상반되는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절충을 위하여 정문을 제출한 사례이다.

역관을 연이어 예부로 보내어, ‘저군(儲君) 두 글자를 폭백(暴白)할 뜻으로 정문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니, 제독 이하가 도리를 내세워 굳이 거절하였습니다. 사태를 보건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상을 받는 날 신 등이 대궐에 들어가 친히 예부에 정문하니, 시랑(侍郎) 왕결(王杰)이 엄하게 물리치고 받지 않으므로,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성색(聲色)을 바꾸며 말하기를, ‘그대들의 일은 결국 분수에 지나치는 행위이다. 오늘은 상을 줄 수 없으며, 사신을 먼저 참론(參論)하겠고, 장차 국왕에게도 좋지 못한 행자(行咨)가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통관(通官) 오림포(烏林布)·박보수(朴寶樹)·김복괴(金福禰)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터럭과 살이 모두 조선의 은덕(恩德)을 입었는데, 만일 추호라도 국왕께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오직 성심에서 나온 것이니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 정문은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실로 힘을 얻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다시 생각하기를, ‘이미 저들이 행자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돌아가 조정에서 죄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여, 결국 정문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sup>23</sup>

22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1720년. “상서가 대답하기를, ‘東國 사신이 이미 예법에 근거하여 고집하니, 잔치에 참례하지 않겠다는 한 가지 일은 마땅히 원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황상께서 잔치를 내리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사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23 李岬, 『燕行記事』, 1778년 3월 29일. “連送任譚輩於禮部, 以儲君二字, 卞暴之意, 欲爲呈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1777년 사행한 이갑(李岬)의 『연행기사(燕行記事)』에 실려 있다.<sup>24</sup> 인용문과 같이 정문의 작성과 제출에는 조선 사신의 관소를 담당하던 회동관 제독(提督)에게 그 초본을 보여주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정문의 제출이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자문을 받았다. 제독은 전례(前例)를 고려하고 사신은 잘 모를 수도 있는 현지의 특수한 상황이나 정치적 관계 등을 살펴 정문의 제출이 적절한지 알려주고 제출 시기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정문의 제출 방식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 순으로 사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사신이 예부에 자문(咨文)과 주문(奏摺)을 제출함.
- ② 황제가 조선의 자문에 격식에 맞지 않는 어투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예부의 회자(回咨)가 있었다. 사신은 회자의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황제가 친히 지적한 것이라 임의로 고칠 수 없다고 하기에, 정문할 것을 고려함. (1월 21일)
- ③ 사신은 전례를 확인하여 1660년(順治 17), 1680년(康熙 19), 1728년(雍正 6)의 주문(奏文)에 유사한 사례가 등장한다는 내용으로 정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회동관제독 소릉액(蘇楞額)에게 먼저 보였으나, “황상의 특지(特旨)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외방(外邦)의 배신(陪臣)이 결코 정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거절함. (2월 8일)
- ④ 상을 받기 위해 대궐에 나아갔을 때, 오문 밖 조방(朝房)에서 예부시랑

---

文云。則提督以下。據理牢拒。觀其頭緒。計無所出。領賞之日。臣等入闕。親爲呈文於禮部。侍郎王杰。則嚴斥不受。故連爲往復。則未乃聲色不平。以爲爾輩事。終不免越分之嫌。今日不得頒賞。使臣爲先參論。將有不好行咨於國王之舉矣云云。且通官烏林布。朴實樹。金福輩。以爲吾等髮膚。皆被朝鮮恩德。如有一毫貽害於國王之事。則吾輩之心。當如何耶? 吾言專出於誠心。必爲深量。呈文則更勿生意好矣云云。到此地頭。實無得力之望。臣等更思之。既聞渠輩行咨之說。則無寧含默而歸。被罪於朝廷。故遂不得呈文而出矣。”

24 당시 사행은 正使는 河恩君 李晄, 副使는 李岬, 書狀官은 李在學이었다.

왕걸(王杰)을 만나 정문을 전달하였으나 분수에 넘는 일이라며 수령을 거부함. 사신은 여러 차례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는 성색을 바꾸며 거부함. (2월 10일)

- ⑤ 귀국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선래장계(先來狀啓)를 작성하여 발송함. (2월 12일)

사신이 제출한 자문에 대해 건륭제는 ‘저군(儲君) 등의 구절을 언급했고, “체식(體式)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사신이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자문에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었다는 질책을 받을 상황이었다. 이에 사신은 해당 구절이 전례가 있는 것임을 확인한 뒤에, 정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회동관 제독에게 보였으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다. 그러자 다시 예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상을 수령하는 날에 가지고 가서 예부시랑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또한 거절당했다. 황제가 친히 지적한 것이므로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정문은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게 된다면 예부에서 수령을 거부하곤 하였다. 이갑을 비롯한 사신들은 그들은 황제의 지적에 대한 해명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에, 복명한 이후 정조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 Ⅲ. 정문의 의미와 활용 양상

예부에 제출하는 정문은 그 목적이 매우 다양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조선 사신 측의 사정으로 연회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나, 조선으로 가져올 칙서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변무(辨誣)와 관련된 문제나 원군(援軍)을 청하는 것과 같이 민감한 외교적 문제나, 사신이 지내는 관소가 좁으니 옮겨달라는 등 비교적 사소한 내용도 보인다. 대체로 사행 목적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변무사·주청사 등과 같이 별도의 사행을 꾸려 보낼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정례적인 사행편에 정문을 추가하여 보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문의 구체적인 활용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문장으로 나라를 빛냄

고려시대에는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두어 사대문서를 담당하였고, 조선초 태종에 와서는 이를 승문원(承文院)으로 개칭하여 존속되었다. 생산 절차를 정리하면 ① 제술(製述), ② 선사(繕寫), ③ 흑초사대(黑草查對), ④ 필사(畢寫), ⑤ 안보(安寶), ⑥ 봉과(封裏)의 단계를 거쳤다. 절행(節行)이면 표문(表文)을 작성하고, 별행(別行)이면 사은표(謝恩表), 진위표(陳慰表) 등을 작성하였다. 표(表)·전(箋)은 예조에서 예문관(藝文館)으로 이문(移文)하여 제술(製述)하고, 임금이 이를 어람(御覽)한 다음 승문원(承文院)으로 계하(啓下)하였다. 예물단자(禮物單子)는 계하한 뒤에 호조와 공조에서 준비(措備)하였다. 일반적으로 본문은 문형(文衡)이라 불리는 지제교(知製敎)나 대제학(大提學)이 작성하였고, 문서의 수미(首尾)는 승문원의 제술관(製述官)이 담당하였다. 중국에 전할 사항에 다양한 미사여구를 삽입하여야 했으므로 뛰어난 문장 실력이 필수적이었다. 문형은 당대의 문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로 『동문휘고(同文彙考)』·『괴원등록(槐院臚錄)』의 작성자는 대부분 문

형이었다.<sup>25</sup>

사신은 되도록 문장을 잘하는 이를 선발했다. 급작스럽게 황제나 중국 측 문인들의 응제시(應製詩)를 요구받거나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문의 제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장력이 일종의 국력으로 인식되던 조선 전기에는 외교 현안의 성공적인 완수는 기본적인 사항이었고,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야 하는[以文華國] 책무도 깊어졌다.

신사년, 당고(唐阜)와 사도(史道) 두 조사(詔使)가 우리나라로 왔을 때 지금의 우상(右相) 용재공(容齋公)이 원접사(遠接使)가 되었다. 두 사신은 문장을 좋아하여 무릇 경치를 만나서 흥취가 일면 문득 붓을 쥐고 시를 지어 밤으로 낮을 이으면서 시 읊기를 그치지 않았다. 공은 태연히 응수하여 좌우로 수답(酬答)함에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는 듯 했으나 구절이 더욱 기이하였으니, 두 사신이 크게 경복(敬服)한 나머지 이별할 때가 되어서는 눈물을 닦으면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아녀자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와 정운경(鄭雲卿), 이백익(李伯益)이 곁에서 직접 목격하매 자부심이 느껴지는 듯하였다. 그때 지은 『황화집(皇華集)』을 두 질로 편찬하여 집에 보관해 두고 사람들이 독송하곤 하였는데, 처음 압록강 가에서 두 사신을 영접하고부터 송별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일행끼리 서로 창화(唱和)한 작품들을 공이 『동사집(東槎集)』이라 명명하였다.<sup>26</sup>

1521년(중종 16), 명나라의 신황제등극반조사로 당고, 황문, 사도가 조선

25 김경록, 「조선시대 事大文書の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집(2006).

26 李荇, 『容齋集』, 〈東槎集後序〉[蘇世讓撰]. “辛巳歲, 唐·史兩詔使來也, 今右相容齋公, 爲遠接使. 兩使喜文章, 凡遇景興懷, 輒把筆爲詩, 夜以繼日, 吟哦不輟. 公怡然受之, 左酬右答, 初不似經意而語益奇, 兩使大加敬服. 臨別, 披淚徘徊, 戚戚然有兒女子之容. 余與鄭雲卿·李伯益, 從傍目擊, 若有所自負. 其所著皇華集, 彙爲兩帙, 家藏而人誦之, 自初迎于鴨綠江上, 既送別而還也, 私相唱和之作, 公目爲東槎集.”

에 왔다. 조선 측의 접반사는 이행(李衍), 종사관은 정사룡, 소세양, 이희보였다. 당시 주고받은 작품을 묶어 『동사집』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들이 다니며 창수한 곳곳에는 제영(題詠)이 걸려 있어 후대의 사신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칙사들이 돌아갈 때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였을 정도였다고 하니 조선의 문명(文名)이 크게 높아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외교 현안에 있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문장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 이는 ‘문학적 대결의식’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서거정은 명나라 칙사를 접반하면서 차운 반복과 선창을 시도하였다. 차운(次韻) 횡수가 경쟁적으로 늘어나 착운(窄韻)으로 20여 편을 수창하면서도 시상(詩想)이 중복되지 않아 중국 사신은 크게 감탄하였다. 이들이 경유한 조선의 승경(勝景)은 양국의 문장 수준을 겨루는 일종의 전장(戰場)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결의식의 이면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능문자(能文者)로 선발되었다는 자부심과 문명국으로서의 자존심이 깔려 있다.<sup>27</sup> 『황화집』은 그러한 ‘문학적 대결’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야담집에 ‘중국 칙사가 일반 백성실제로는 변장한 문인을 만나 문장의 훌륭함을 알고 조선을 업신여기지 못하였다.’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관원들 역시 과거를 거쳐 관직에 오른 자들로서 글을 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 훌륭한 문장가를 소국(小國) 사람이라 하여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외교문서의 작성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문장력을 과시하고 외국에서도 인정받아 이름을 드날릴 기회였다. 이는 정문도 마찬가지다. 사신에 선발되어 정문을 집필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공인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27 김덕수, 「서거정의 황화수창과 문학적 대결의식」, 『진단학보』 136집(2021); 김덕수, 「황화수창 시고의 작성과 간행: 1537년 황화수창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9집(2022).



“진하사 소세양이 북경에서 돌아왔기에 인견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니, 중국 조정의 예부낭중 및 상서가 소세양이 글에 능한 것을 알고서 지은 글을 보여주기를 청하므로 소세양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그가 지은 것을 보여주니 모두 감복하여 칭찬하였다고 한다. 또 상서가 일찍이 자기가 지은 것도 보여주는가 하면 거듭 서책도 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줄을 진작 알았더라면 대우를 준례대로만 하지 않고 마땅히 후하게 했을 것이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국가를 빛낸 것은 참으로 예사롭지 않다.

대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후히 대우하는 것은 예의와 문헌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갈 적마다 반드시 글에 능한 사람을 가려 과시(誇示)하는 데 뜻을 둘 수는 없지만, 더러 가려서 보낸다면 정문(呈文)할 때나 말을 할 때 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요즈음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사룡을 수사(水使)에 제수하였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건대, 정사룡은 수사에서 체직(遞職)시키고 경직(京職)에 충차(充差)했다가 이 다음 북경에 갈 적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라.”<sup>28</sup>

1534년 4월 24일, 진하사 소세양이 사행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중종은 그의 보고 중에서 시 2수가 중국 예부 관원의 칭찬을 얻었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이 일은, 3월 10일 예부낭중 증존인(曾存仁)이 소세양의 시를 상서 하언(夏言)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극구 사양하였으나 적어도 되니 보여달라고 하여, 2수를 써 보내주었더니 상서가 자신의 시 세 수를 서리를 통해 보내며 시가 매우 좋다고 칭찬하고, 진작 알았으면 더욱 우대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낭중 증존인 역시 『춘추공양전』과 『춘추곡량전』 및 주자의 시집을 보내주었다.<sup>29</sup>

28 『중종실록』, 중종 29년(1534) 4월 27일 1번째 기사.

29 『중종실록』, 중종 29년(1534) 4월 24일 1번째 기사.

중종은 소세양의 보고를 듣고, 중국에 사신을 보낼 적에 글에 능한 이를 뽑아 보낸다면 정문할 때 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정사릉을 경직에 충차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다. 이처럼 사신으로 차임되는 이를 이왕이면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았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소세양은 임금의 하사하는 술을 받아 마시는 영광을 누린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사관은 소세양을 ‘중국에서 칭찬받은 글을 가지고 임금 앞에 진달하며 조금의 겸손함 없이 재주를 자랑하므로 식견 있는 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는 점이다.<sup>30</sup> 또한 대사간으로 있던 이임(李任)은 “외람되게 추악한 시를 가지고 중국에 자랑하여 보였으니, 청컨대 그 죄를 추궁하소서.”라고까지 하였다. 같은 내용이 『패관잡기(裨官雜記)』에도 등장하는데 어숙권(魚叔權)은, ‘이 시는 우연히 하공(夏公)의 눈에 띈 것이니 중국에 자랑하여 보였다는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하공이 마음으로 이미 허여(許與)하여 그의 시고(詩稿)까지 주었으니, 추악한 시로 볼 일은 아니다.’<sup>31</sup>라고 하였다. 소세양의 입장에서는 굳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임금에게 자랑하였다는 혐의를 덮어씌우고 오히려 ‘추악한 시’라고까지 깎아내리고 있다. 이처럼 해당 사건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에도, 당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뛰어난 문장력은 정문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교적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윤근수(尹根壽) 공이 경략 송응창(宋應昌)의 접반사가 되었을 때 윤공의 요청

30 『중종실록』, 중종 29년(1534) 4월 27일 2번째 기사.

31 魚叔權, 『裨官雜記』 권4. “按此詩, 偶爲夏公所見, 而謂之誇示中原, 不亦過乎. 夏公心既許之, 至於贈其詩稿, 則恐不作惡詩看也.”

에 따라 공이 부사가 되었는데, 무릇 정문과 수응은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경략은 마음이 좁고 곧잘 화를 내는 성격이었는데, 공이 작성한 정문을 받아 볼 때마다 번번이 좋아하면서 훌륭하다고 칭찬해 마지않았다.<sup>32</sup>

장유(張維)가 오전(吳曄)에 대해 쓴 묘지명의 일부이다. 윤근수는 경략 송응창의 접반사가 되면서 오전을 부사로 삼았는데, 그가 정문을 잘 써서 번번이 칭찬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의 글에서는 정문을 잘 써서 경략의 칭찬을 받았다는 점과 접반에 필요한 대부분의 문학과 수응이 그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오전과 같은 역할을 맡은 오억령(吳億齡)에게도 ‘모든 정문과 시문의 수창은 전적으로 공의 책무였다.’<sup>33</sup>라는 똑같은 내용이 있다. 같은 사건에 일을 도맡은 이가 둘이라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의 원군을 청하였다. 이듬해 들어오는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李如松)에 대해서는 이덕형(李德馨)과 한응인(韓應寅)이 접반을 맡았고, 역시 명나라 장수인 송응창은 윤근수가 접반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글을 잘하는 명류(名流)들로서 최고의 인물을 선발하고 역할을 분배하여 팀을 만들었고 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엄중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여러 문인이 역할을 나누어 문서를 작성하고 시를 수창하는 일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번 감군 접반사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주선하고 응대하는 즈음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게 된다면 나라의 성패와 존망이 이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 의논하여 천거한 사람이 이 임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32 張維, 『谿谷集』卷11, 〈故議政府右參贊吳公墓誌銘〉. “尹公根壽接伴經略宋應昌, 請公爲副使, 凡文翰酬應, 多出公手. 經略褊心喜嗔怒, 而每得公呈文, 輒悅嘖嘖稱善.”

33 吳億齡, 『晚翠集』, 〈晚翠集年譜〉[吳挺緯]. “癸巳春, 移吏曹參議. 時尹公根壽接伴經略宋應昌, 請公爲副使, 凡呈文酬唱, 專責公.”

아니나, 재기(才器)가 우수하고 문翰(文翰)이 풍부한 사람으로는 이정귀만한 이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중국에 사신으로 가 진실(縉紳)들 사이에 이름을 아는 자가 많으니, 감군도 반드시 그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오는데 이 사람이 아문에서 동정을 살피도록 한다면 나랏일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sup>34</sup>

이정귀(李廷龜)는 글을 잘하였으며 사행 경험이 많고 안찰사 양지원(梁之垣)이 감군어사(監軍御史)로 왔을 때 접반사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인사들과 인적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월사집(月沙集)』의 서문을 양지원과 왕휘(汪暉), 그리고 강왈광(姜曰廣)이 써주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왕휘(汪暉)는 그의 『조천록(朝天錄)』 서문에, “生意가 가득 왕성하고 신리(神理)가 환히 발산되어, 조식(曹植)과 유정(劉楨)보다 탁월하고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를 능가한다.”<sup>35</sup>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정문은 당대의 일류 문인이 작성하였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광일 뿐 아니라, 작성자의 문장력이 외국에 널리 알려지고,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며, 더 나아가 어려운 외교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문의 무게가 어떠한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청병(請兵)과 변무(辨誣)에 활용

정문은 조선 사신이 실제 외교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핵심적인 문서였다. 아울러 정문을 통해 심각한 외교적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였

34 『광해군일기』, 광해군 14년(1622) 2월 13일 기사.

35 李廷龜, 『月沙集』, 〈月沙先生集序〉(汪暉). “生意洋然, 神理煥發, 卓異曹劉, 駕軼李杜.”

고, 이는 외교적 성과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조사한 결과 문집에는 정문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임진왜란 시기에 대명외교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작성한 문서라는 점이다.

정곤수(鄭崐壽)를 시작으로 최립(崔嶽)·김득(金玔)·유몽인(柳夢寅)·이수광(李睟光)·정경세(鄭經世)·이정귀(李廷龜)·김상헌(金尙憲)·김육(金瑬)까지 총 9인이다. 이들은 적게는 1~2차례 많게는 4차례의 사행을 한 경험이 있고 칙사의 접반 경험 역시 풍부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편의 정문이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하나하나가 드라마틱한 외교적 성공의 결과물이다.

본 절에서는 현전하는 문집에 정문을 수록해 놓은 인물을 중심으로 그 대략적인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9인의 주요 행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문집에 발견되는 정문의 작성자와 주요 활동사항<sup>36</sup>

| 성명               | 사행시기                          | 주요 활동사항   |
|------------------|-------------------------------|---|
| 鄭崐壽<br>1538~1602 | 1592(1)<br>1597(2)            | 1592년 8월 請兵陳奏使<br>1593년 1월 宋經略의 迎慰使<br>3월 平壤에서 李 提督, 張 副摠에게 문함함.<br>6월 李如松의 接伴使<br>윤11월 遠接使<br>1597년 12월 謝恩兼辨誣陳奏使 |
| 崔嶽<br>1539~1612  | 1577(1)<br>1581(2)<br>1594(3) | 1577년 奏請使 質正官<br>1581년 奏請使 質正官<br>1594년 奏請使 副使  |
| 金玔<br>1540~1616  | 1602(1)                       | 1599년 接伴使<br>1602년 冬至使 正使   |
| 柳夢寅<br>1559~1623 | 1592(1)<br>1596(2)            | 1592년 奏請使 質正官<br>1593년 李如松의 接伴使, 經略 宋應昌 接伴使   |

36 해당 내용은 한국고전번역DB에서 검색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  |   |
|------------------|--|---|
|                  | 1609(3)                                  | 1596년 명 사행<br>1606년 朱之蕃, 梁有年 接伴使<br>1609년 명 사행                              |
| 李晔光<br>1563~1628 | 1590(1)<br>1597(2)<br>1611(3)            | 1590년 聖節使 書狀官<br>1597년 進慰使<br>1611년 副使                                      |
| 鄭經世<br>1563~1633 | 1609(1)                                  | 1609년 冬至使   |
| 李廷龜<br>1564~1635 | 1598(1)<br>1601(2)<br>1604(3)<br>1616(4) | 1593년 經略 宋應昌 接伴使<br>1598년 陳奏使 副使<br>1601년 冬至使 書狀官<br>1604년 奏請使<br>1616년 奏請使 |
| 金尙憲<br>1570~1652 | 1626(1)                                  | 1626년 聖節兼謝恩陳奏使<br>1639년 청나라 압송  |
| 金堉<br>1580~1658  | 1636(1)                                  | 1636년 冬至聖節千秋進賀使   |

차례대로 사건과 남아있는 정문을 일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곤수는 임진왜란 때 대명외교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백곡집(栢谷集)』 권2에는 13편의 정문이 실려 있는데 그 외에 계(啓)·장계(狀啓)·계첩(揭帖) 등의 글도 있다. 대부분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작성된 것으로 저자의 대명 외교의 산물이다. 특히 요동순무어사 이시자(李時孳)와 병부상서 석성(石星)에게 원군을 청하는 정문을 주목할 만하다.

최립은 당대 일류의 문장가로 인정을 받아 중국과의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였다.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 문단에 군림하고 있던 왕세정(王世貞)을 만나 문장을 논했고, 그곳의 학자들로부터 명문장가라는 격찬을 받았다. 예부 낭중과 상서 등에게 보내는 정문과 품첩(稟帖), 신첩(申帖) 등 31편이 『간이집(簡易集)』 권4 「사행문록(四行文錄)」에 실려 있다. 이 역시 임진왜란 시기의 산물이다.

김륙의 정문은 『백암집(柏巖集)』에 5편이 실려 있다. 하절사로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 군사가 조선에 남아 있는 것처럼 꾸며 일본의 재침략을 막아 달라는 청을 올렸다.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일본에게 재침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칙서를 보내게 하고 돌아온 내용이다.

유몽인의 『어우집(於于集)』에는 예부에 연회를 거두어 달라고 청하는 내용, 염초와 궁각을 청하고 연례를 면하기 위한 정문이 4편 실려 있다. 그는 1592년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를 평양까지 호종하였다. 왜란 중 문안사(問安使) 등 대명 외교를 맡았으며 세자의 분조(分朝)에도 따라가 활약하였다. 아울러 조선에 파병 온 명군(明軍)의 병기 및 군량 수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한편 명군 막부에서 이정귀, 황신(黃愼) 등과 더불어 명군의 경략 송응창과 『대학』 및 양명학(陽明學) 등을 토론했다. 원접사 유근(柳根), 종사관 김현성(金玄成), 영위사 신흠(申欽), 제술관 백진남(白振南) 등 당대 조선의 문인들과 함께 정사 주지번과 부사 양유년을 응접하기도 했다.

이수광은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정유재란(1597)이 일어나고 명나라 서울에서 중극전(中極殿)과 건극전(建極殿) 등 궁전이 불타게 되자 진위사(陳慰使)로서 명나라를 다녀왔다. 이때 명나라 서울에서 베트남(安南)의 사신을 만나 화답하면서 교류했다. 정문 1편이 전하고 있다.

정경세는 1609년 동지사로 명나라에 갔으며, 이듬해 돌아와서는 화약의 매입을 예년의 갑절로 해달라는 내용의 정문을 병부(兵部)에 올렸다. 이후로도 명나라와 교섭하여 그 수입에 힘썼기에 특지(特旨)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칭호를 받았다.

이정귀는 1593년 명나라 칙사 송응창을 만나 『대학』을 강론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1598년에는 진주사의 부사로 사행을 갔는데 명나라의 병부주사 정응태(丁應泰)가 임진왜란이 조선에서 왜병을 끌어들여 중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무고사건을 일으켰다. 이정귀는 유명한 「무술변무주(戊戌辨

誣奏)를 짓고, 진주부사로 명나라에 들어가 정응태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혀 그를 파직시키기에 이른다. 중국어에도 능하여 어전통관(御前通官)으로 명나라 사신이나 지원군을 접대할 때에 조선 조정을 대표하며 중요한 외교적 활약을 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사행을 갔고 문장이 크게 알려져 중국 문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100여 장의 『조천기행록(朝天紀行錄)』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정귀의 『월사집』에는 12편의 정문이 실려 있다.

김상헌은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예부와 병부에 올린 정문 3편이 있는데 이 역시 명나라에 올린 것이다.

김육은 1636년 동지성절천추진하사로 사행을 갔다. 『잠곡유고(潛谷遺稿)』에 사행을 떠나는 길을 바꿔 달라고 청한 것과 염초와 유향을 구입하는 정문 등 4편이 실려 있다.

이처럼 여러 문인들이 정문을 문집에 실어놓았는데, 해당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명·청 교체기에 걸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문은 당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황화수창(皇華酬唱)의 중단 이후 시(詩)가 국가적 관심사에서 밀려나게 된 것처럼<sup>37</sup> 정문의 위상 역시 크게 낮아지게 된다. 명나라가 망하고 중원을 청나라가 차지하게 된 이후로는, 조선 문인들은 오랑캐로 여기는 청나라에 제출한 정문을 구태여 문집에 실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진왜란과 같이 커다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일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8~19세기에 와서도 정문을 많이 활용하였으나 따로 문집에 실지 않고 연행록에 정문을 제출했다는 기사 정도만 등장하고 있다.

---

37 장유승, 「19세기 한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기 한시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한시학회』 26집(2018).



### 3. 사신(使臣)의 요구사항 관찰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6세기의 대명 외교를 펼친 사신들의 정문은 대부분 개별 문집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시기인 17~19세기에는 실록과 연행록에서 정문을 제출했다는 단편적인 내용만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정문과 같은 외교문서를 통해 상대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시집이나 문집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서발문(序跋文)을 받으며 교유를 나누는 방식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16세기는 정문의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던 매우 엄중한 시점이어서, 원군을 청하거나 명나라에 대하여 조선의 오해를 푸는 변무(辨誣)와 같이 심각한 내용이 많다.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이후인 17세기 후반부터는 두 나라의 관계가 점점 안정되어가면서 이전 시기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 많아진다. 아울러 정문의 전문(全文)이 확인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요약된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안정되어 정문의 외교적 활용이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문을 제출하였다는 기사는 19세기 말의 연행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사신은 정문을 통해 문금(門禁)을 피해 관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여러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다. 사행 노정을 지날 때, 이동의 문제와 숙박 및 수검(搜檢) 등에서 겪은 부당함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나친 뇌물을 요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럴 때 사신은 예부에 정문을 올려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상황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연행 노정에서 나타난다.

정문으로 큰 문제가 된 사례는 1686년 정재송(鄭載嵩)의 사건을 들 수 있다. 1685년에 함경도(咸鏡道) 지역 백성들이 중국의 국경을 넘어가 청나라

사람을 싸 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청나라에서 칙사를 파견하여 직접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진주사를 보내어 사건 처리를 보고하고 사죄하였다.

정재승은 진주사의 정사, 최석정(崔錫鼎)은 부사로 청나라에 갔는데, 청나라에서 이번 사건의 잘못을 물어 벌은(罰銀)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신은 정문을 작성하여 벌은을 면제해 달라고 청하였다. 정문의 내용은 범월인(犯越人)이 청의 관원을 싸 죽인 사건은 국왕과 관련이 없으며, 그런 문제를 국왕에게까지 끌어오진 않았으니 숙종에게 부과된 벌은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날 비천한 신하가 국왕에게 이뢰지도 않고 함부로 정문을 올렸다고 힐책하며, 이는 모두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니 청나라의 보호가 없었다면 신하가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내용으로 자문을 작성하여 보내왔다.<sup>38</sup> 특히 정문의 내용을 다섯 가지로 지적하며 비판하였기에, 숙종은 “극히 패만한 말투의 그 꾸지람은 실로 병자년 이후로 아직 없었던 모욕이다.”라고 하며 분노하였다.

김진귀(金鎭龜)는 양사(兩司)의 관원들과 합계(合啓)하여, 사명(使命)을 받든 자가 잘못을 저질러 군주에게 욕이 미치게 하고도 이에 대해 힘껏 쟁변하지 않은 채 그저 사죄의 뜻만 보이고 돌아온 것을 문제 삼아 정재승과 최석정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sup>39</sup> 정재승의 정문 사건 이후, 숙종 전반기 동안에는 정문을 통해 외교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sup>40</sup>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신 입장에서 정문의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38 『숙종실록』, 1685년 10월 9일; 1686년 윤4월 29일; 1686년 6월 6일 기사.

39 『숙종실록』, 1686년 6월 6일 기사.

40 김창수, 「17~18세기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과 조선·청 관계 구조」, 『조선시대사학보』 88집(2019).

애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해명의 노력이 없다면 복명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사신들이 서로 의논하되,

“이제 우리의 사정은 마땅히 연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나, 예부에서는 우리나라 사신을 경유하지 않고 가만히 정문(正文)의 사연을 고쳤다고 하니, 이는 비단 눈앞의 일이 해피할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두고 변명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폐단이 클 것인즉, 마땅히 다시 예부에 글을 제출하여 그들이 몰래 고친 것을 밝힌 연후에 길을 떠나야겠다.”

하고는, 곧 역관에게 시켜서 예부에 글을 제출하니, 제독(提督)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대개 덕(德) 상서(尙書)에게 먼저 알렸는데, 상서 등도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위협을 더하되,

“이 일에 대한 허물을 장차 우리 예부에다 넘기고자 하는 것이냐? 예부에서 죄를 얻는다면 너희 사신인들 좋겠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전주(轉奏)를 청한 정문이야말로 사연이 모호하여 전연 성의를 표한 실상이 없었으나, 내 실로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도로 꾸며 진달해서 그 영광스럽고 감격한 뜻을 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리어 이렇게 한단 말이나. 이는 실로 제독의 과오가 더 크겠지.”

하고는, 정문을 떼어 보지도 않고 물리쳤다. 사신이 그제야 제독을 맞이하여 예부에 대한 모든 사정을 상세히 물은즉, 그 이야기가 몹시 장황해서 알아듣기 어려워 한참 동안을 머뭇하고만 말았을 뿐이다. 그리고 예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곧 길 떠날 것을 재촉하되,

“사신 일행의 떠나는 시간을 적어서 곧 위에다 아뢰겠다.”

하니, 이다지 떠나기를 재촉함은 대개 다시 글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이다.<sup>41</sup>

---

41 朴趾源, 『熱河日記』, 『還燕道中錄』, 1780년 8월 15일 기사.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은 열하에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는 8월 15일에서 20일 사이의 일기이다. 위 인용문은 열하에서 북경으로 출발하는 시점을 서술하고 있는데, 정문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진다. 열하에서 사신은 황제의 연회에 참가하였고, '조선 정사는 2품 끝의 반열(班列)에 서라.'는 황제의 명이 있었다. 이는 전에 없던 은혜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예부에서는 황갑하다는 글을 정문을 통해 올릴 것을 귀찮을 정도로 재촉하였다. 함께 있던 역관은, 자신이 심양에 갔을 때도 정문을 올려 사례하는 일이 있었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하여 부사와 서장관이 정문을 만들어 제출했다.

문제는 다음에 터졌다. 예부에서 정문을 황제에게 상주할 적에 여러 부분을 첨개(添改)하여 원본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신은 크게 놀라 역관을 시켜 조방(朝房)으로 가서 무슨 까닭으로 정문의 내용을 고쳤냐고 묻게 하였다. 그러자 예부 낭중은 펄쩍 뛰며 그대들이 지은 정문에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어 예부의 대인들이 너희 나라를 위해 주선하여 바친 것이라며 오히려 사신을 압박하였다.<sup>42</sup>

예부에서는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 조선 사신이 실제로 제출한 내용에 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가로 적어 내었던 것이다. 조선 사신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이후의 폐단이 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황제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예부의 관원들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었기에 그들 역시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때문에 돌아가는 일정을 임박하게 하여 조선 사신은 당장 북경으로 출발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예부에서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한 정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멋대

---

42 구범진,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인문논총』 70집(2013).

로 고치는 문제적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병신년(1776)에 상국(相國) 김치인(金致仁)이 고부사(告訃使)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교보(高橋堡)에 이르러서, 밤에 공금으로 가지고 있던 은 1천 냥을 잃어버렸다. 사신들이 의논하기를 “공금(公貨)은 진실로 명백한 사용처가 없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나라의 법이다. 지금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들, 남들이 믿지 않을 것이니, 장차 무슨 말로 돌아가 보고를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지방관에게 정문을 보내니, 증후소(中後所)의 참장(參將)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금주위(錦州衛)와 산해관(山海關)에 전달하여 보고하였다. 이렇게 하여 며칠 만에 예부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건륭제가 칙령을 내려 해당 지역의 공은(公銀)으로 우선 사신이 잃어버린 것만큼을 보상하게 하고, 순찰에 유의하지 못하여 멀리서 온 사신이 재물을 잃고 원통한 지경이 되었으니 당해 지방관을 파직시키고 객점의 주인과 의심 가는 자들을 심문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모두 잡아들여 치죄(治罪)하니 사형을 당한 자가 4, 5인이었다. 사행이 심양에 이르기 전에 황제의 명령이 이미 내렸으니, 명령을 거행하는 것이 이처럼 신속하였다.

이 일이 있는 뒤로 객점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원수 보듯 하였다고 한다. 사행이 돌아와 복명하고, 그 사실을 날날이 아뢰자, 정조께서 교지를 내리기를 “그깟 재물로 인하여 번거롭게 상주(上奏)하여 지나치게 외람된 일을 하고, 게다가 명분 없는 은까지 받아왔으니, 체면을 크게 잃었다.”라고 하시고, 마침내 삼사(三使)에게 죄를 주었다. 이 일은 지금까지도 훌륭한 일로 일컬어진다.<sup>43</sup>

1776년 영조의 승하를 알리기 위한 고부주청 겸 진주사행이, 고교보에서

43 韓弼教, 『隨槎錄』 권4, 「聞見雜識」, 1831년

양씨(班氏)의 집에서 묵었다. 그런데 정주(定州) 사람 방차동(方次同)이 보관하고 있던 1천 냥을 누군가 훔쳐 간 사건이 발생하였다.<sup>44</sup> 이 사건은 후대의 연행록에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1777년 사행한 이갑의 『연행기사』, 1778년 이덕무(李德懋)의 『입연기(入燕記)』, 1780년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등장한다. 또한 1803년 이해응(李海應)의 『계산기정』, 1828년 박사호의 『심전고』, 1831년 한필교(韓弼敎)의 『수사록』 등이다. 위 기사는 『수사록』에 실린 내용이다.

사신이라는 업무를 국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따져볼 때, 쓸데없는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 비용은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예단과 사행의 목적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쓰는 뇌물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서 극히 조심할 것은 없던 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한번 사례가 만들어져 전례로 굳어지면, 예단이나 뇌물을 요구하는 데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1천 냥이나 되는 은을 도난당하였는데 당시 사신의 입장에서는 정문을 올려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일이 커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지방관은 파직되고 용의자를 잡아 심문하여 죽은 자가 4~5인이나 발생했다.<sup>45</sup> 사신이 복명하자 정조는, “관은(官銀)을 잃어버리고는 번거롭게 정문하여 심양에서 배상해내게까지 하고 황지(皇旨)에서 ‘조선으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게 하였다.’고 하게 만들었으니 대국에 수치를 끼침이 극심하다.”라며 세 사신을 파직하였다.<sup>46</sup>

44 김선민, 「乾隆年間 朝鮮使行의 銀 분실사건」, 『명청사연구』 33권(2010).

45 김선민의 연구에 따르면 총 네 차례의 은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1776년의 사건에서는 건륭제가 관련자들을 交部嚴議하였던 것만 확인되며 사행에 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高宗純皇帝實錄』 乾隆41년 6월 28일 1번째 기사 참조.

46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1776) 9월 1일 4번째 기사.

정조는 사신들의 처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파직한 것인데, 사행을 떠난 사신들은 50년이 지난 이후로도 훌륭한 일로 평가하고 있었다. 훌륭한다는 것은 물론 정조의 처분일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사행길에서 겪는 부조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횡포를 받아 온 조선 사신 측에서는 한번은 그들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도둑맞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뇌물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국면이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문을 제출하겠다’며 엄포를 놓으면 중국 측 관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웬만하면 조선 사신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5리를 가서 통원보(通遠堡)에 이르러 객줫집 문을 들어가려는데, 갑군(甲軍) 5~6인이 내 말을 한 곳으로 끌어가서 말 짐 위에 작은 종이를 붙여서 표를 한다. 그 종이에 ‘봉당위(奉堂尉)라는 세 글자를 쓰고 또 ‘책문일수검(柵門日搜驗)’이라고 썼으니, 그 뜻이 은자(銀子)를 요구하는 데에 있다. 사신이 그들이 피부리는 데에 노하여 수역(首譯)과 영송관(迎送官)을 시켜서 말하기를,

“접때 낭자점(狼子店)을 지날 때에 너희들이 심양 객줫집의 일에 유감을 품고 촌가의 집들을 지휘하여 우리가 묵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공물 바치는 길을 막는 것이다. 너희가 길을 막을지라도 해마다 바치는 예는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비록 한 달을 묵더라도 이런 뜻을 예부에 정문하여 황제의 처분이 어떠한지 기다린 뒤에야 맹세코 고국에 돌아가리라! 또한 오늘 도장 찍은 쪽지를 일행의 말 짐에 붙이고 또 상으로 내려 주신 말을 엮매어 가지 못하게 함은 대체 무슨 까닭이나? 이 몇 가지 일은 너희들과 다투어 가리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 사람이 크게 두려운 빛을 띠고 빌기를,

“심양의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말 짐에 표를 붙인 것은 關路에서 오래 있는 법입니다. 만약 대인 일행의 말 짐인 줄 알았더라면 어찌 감히

그러하였겠습니까? 제가 대신께 사과합니다. 빨리 붙인 종이를 제거하겠습니다.”

한다. 대개 말이 바르고 이치가 맞으면 비록 교만한 되놈의 간사한 꾀일지라도, 절로 사라지는 것이니 우습다.<sup>47</sup>

1792년 사행한 김정중(金正中)의 『기유록(奇遊錄)』에 실린 기사이다. 당시 사신은 오는 길에 낭자점에서 목을 예정이었으나 갑군들이 심양에서의 일에 유감을 품고 목지 못하게 만들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짐에다가 ‘奉堂尉 柵門日搜驗’이라고 쓴 종이를 붙여놓았다. 책문에서 또 은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갑군배들조차 사신을 이처럼 능멸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신은 분노하며 지금까지 갑군들이 한 짓을 정문하여 황제에게 고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두려워하며 종이를 떼겠다고 하였다.

이날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에, 일행이 짐을 싸고 행장을 차리고서 봉황성장이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낮이 지나도록 소식이 아득하다. 아마도, 해마다 절사(節使)가 드나들 적에 봉황성장이 문을 열지 않으려 하면 으레 은자(銀子) 얼마를 주었으므로, 봉황성장이 그 재화를 이롭게 여겨, 이번 행차에 있어서도 심양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핑계하고 6~7일이 지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리라. 사신이 역관들에게 말하기를,

“저들이 뇌물을 탐내기 심함이 이를 데 없다. 비록 해를 넘겨 묵더라도 땡전(唐錢) 한 푼도 주지 않으리라.”

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영을 내렸다.

“내일 일찍 말에게 풀을 먹여라. 수레를 돌려 심양으로 다시 들어가 예부에 정문하리니 행중은 모두 그리 알라.”<sup>48</sup>

---

47 金正中, 『奇遊錄』, 1792년 2월 26일 기사.

48 위의 자료, 1792년 3월 5일 기사.



사신이 귀국하는 길,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급한데 일주일이나 되도록 봉황성장은 책문(柵門)을 열어주지 않았다. 책문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봉황성장의 담당하는 일이다. 보통 약간의 은자를 주면 문을 열어주곤 하였으나 돈을 전혀 주지 않자, 자신은 심양에 있다는 핑계로 돈을 줄 때까지 머물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당시 사신이 북경으로 갈 때도 돈을 내라며 굳게 지키고 있었으나, 세 사신이 책문 밖에 장막을 치고 점심을 들며 목을 뚫한 모습을 보이자 봉황성장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다.<sup>49</sup> 봉황성장은 아마도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돈을 받아내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음을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하지만 사신은 책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을 농성하듯 기다렸고, 아예 짐을 풀고 예부에 정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소식을 듣자, 봉황성장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날(3월 6일) 문을 열어주기에 이른다.

사신 일행이 일주일을 책문에서 기다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뇌물이 일상이 된 청나라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처럼 조선 사신은 도가 넘은 요구에 대해서는 정문을 통해 항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정문이 실제로 제출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조선 사신보다는 뇌물을 요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태평이 말하기를,

“수레 끄는 호인(胡人)들은 대개 우직하고 사나워 연로의 큰 수레가 사신 행차들과 비좁은 길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문득 야료를 부리고 억지를 쓰는 자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사를 따라서 여기 왔을 때에 서장관이 먼저 가려고 길을 다투자 수십 명 차부들이 서장관 하인들을 치고 거꾸러뜨려 서장관이 앉은 수레의 포장과 지붕이 찢어지고 상하게 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

49 위의 자료, 1791년 11월 25일 기사.

부사가 이 모양을 보고 노하여 그에게 꾸짖기를, ‘꼭 차부 하나를 잡아오너라. 만일 잡아오지 못하면 너를 타살하겠다.’ 하니 그도 분통을 참지 못하여 가마채를 빼어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 차부들이 일제히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걸음씩 뛰어서 힘껏 따라가서 가마채를 휘둘러 한 놈의 뒤통수를 때려서 땅에 거꾸러지게 하고 다시 가마채를 들고 실컷 두들기고 그의 전대를 풀어 가지고 결박하여 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사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20대의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예부에 정문하려고 초를 잡으니 영송관이 와서 갖가지로 애걸하기를, ‘황상이 아시면 저에게 죄가 돌아옵니다.’ 하므로, 부사가 ‘몇 천 리 동행한 정의로 보아 팔시할 수 없다.’ 하고는 영송관에게 그놈들을 엄중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송관이 30여 명 차부의 성명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 고을 옥에 가두고 그 수레에 실었던 짐들은 몰수해서 관가에 몰수하였습니다. 이 뒤부터는 차부들이 우리 행차만 보면 길을 사양하였습니다.”<sup>50</sup>

한겨울 대릉하(大凌河)를 지나는 중에 정태평(鄭太平)과 서경순(徐慶淳)의 대화이다. 정태평은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연로는 보통 수레가 다니는 길이 하나뿐이었다. 1차선 도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좁은 곳에서는 먼저 지나려고 하여, 상대방에서 수레가 와도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은 서로 먼저 가겠다고 다투는 와중에 서장관의 하인들이 다치고 서장관이 앉아있는 수레의 지붕이 찢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만다.

그 꼴을 본 부사는 크게 분노하여 차부들을 때리고 불리들여 매를 쳤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문하려고 초안을 잡아놓자, 영송관이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부사는 수천 리를 함께 가는 마당이니 용서해주었고, 영송관은

---

50 徐慶淳, 『夢經堂日史』, 『馬營勅征紀』, 1855년 11월 13일 기사.

차부 30명을 옥에 가두고 짐을 몰수하는 벌을 내렸다. 그 이후로는 차부들이 조선 사신의 행차를 보면 길을 비켜주게 되었다.

이처럼 사신은 정문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지만, 올리겠다는 시늉만 취해도 중국 측 관원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 이를 통해 사행길에 겪는 부조리와 뇌물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다.

#### IV. 맺음말

---

정문은 중국에 파견된 조선의 사신이 현지에서 중국 측의 예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에 조선 측 의사를 밝히고 외교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다. 어찌 보면 사신이 중국 현지에서 행하였던 가장 실질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문에는 표문이나 자문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청나라에 알려 협조를 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을 비롯하여 조선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

Ⅱ절에서 정문의 형식과 제출하는 상황과 조건 등을 확인하였다. Ⅲ절에서는 정문의 의미와 활용 양상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문은 당시 현안을 잘 처리하려는 사신의 고민과 최선의 결정이 담겨 있는 글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정문의 전반적인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향후 정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金 功, 『柏巖集』.  
金尙憲, 『淸陰集』.  
金 堉, 『潛谷遺稿』.  
金正中, 『奇遊錄』.  
朴趾源, 『熱河日記』.  
裒三益, 『臨淵齋集』.  
徐慶淳, 『夢經堂日史』.  
魚叔權, 『稗官雜記』.  
吳億齡, 『晚翠集』.  
柳夢寅, 『於于集』.  
李 岬, 『燕行記事』.  
李德懋, 『入燕記』.  
李晬光, 『芝峯集』.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李廷龜, 『月沙集』.  
李 荇, 『容齋集』.  
李廷龜, 『月沙集』.  
張 維, 『谿谷集』.  
鄭經世, 『愚伏集』.  
崔 岏, 『簡易集』.  
韓弼教, 『隨槎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同文集考』, 『通文館志』, 『典律通補』.  
『중중실록』, 『선조실록』.

### 2. 단행본

- 구범진, 『조선시대 외교문서』.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 3. 논문

- 구범진,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인문논총』 70집, 2013, 3~60쪽.
- 김경록, 「조선후기 『同文彙考』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집, 2005, 185~226쪽.
- \_\_\_\_\_,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錄」. 『한국문화』 38집, 2006, 193~230쪽.
- 김덕수, 「서거정의 황화수창과 문학적 대결의식」. 『진단학보』 136집, 2021, 189~220쪽.
- \_\_\_\_\_, 「황화수창 시고의 작성과 간행: 1537년 황화수창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9집, 2022, 119~154
- 김선민, 「乾隆年間 朝鮮使行의 銀 분실사건」. 『명청사연구』 33권, 2010, 139~166쪽.
- 김일환, 「李健命 奏請 사행(1721~1722)과 『寒圃齋使行日記』」. 『동아시아문화연구』 58집, 2014, 181~212쪽.
- 김창수, 「19세기 朝鮮·淸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조선·청 외교문서의 교섭경로와 성격의 역할」. 『역사와 현실』 107집, 2017, 141~174쪽.
- \_\_\_\_\_, 「17~18세기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과 조선·청 관계 구조」. 『조선시대사학보』 88집, 2019, 77~108쪽.
- 박준영, 「朝鮮後期 對淸 賀表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손성욱, 「王世子 冊封으로 본 淸·朝 관계(康熙 35년~乾隆 2년)」. 『동양사학연구』 146집, 동양사학회, 2019, 193~230쪽.
- 이선홍, 「朝鮮時代 對中國 外交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장유승, 「19세기 한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 후기 한시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한시학회』 26집, 2018, 335~362쪽.

## 국문초록

북경(北京)에 도착한 사신들이 표자문(表咨文)을 바치고 난 뒤에는 책봉(冊封)·변무(辨誣)·사은(謝恩) 등, 사행의 목적에 따른 관련 문서의 회답(回答)을 요구하면서 중국과 발생한 여러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정문(呈文)이라는 문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정문은 백성이 관청에 올리거나, 또는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가리킨다. 본고에서 다루는 정문은 중국에 파견된 조선의 사신이 현지에서 중국 측의 예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에 조선 측 의사를 밝히고 외교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다.

정문의 작성과 제출은 사신이 중국 현지에서 행하였던 실질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문에는 표문이나 자문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청나라에 알려 협조를 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을 비롯하여 조선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청나라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문을 지어 제출했다. 정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문의 작성 자체가 작성자의 문장력을 공인받은 증거이고, 이를 중국 문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외국에까지 문명을 떨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외교 현안의 성공적인 완수와 함께 ‘문장으로써 나라를 빛낸다[以文華國]’는 책무를 짊어지고 있던 사신들의 고민이 정문에 집약되어 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 사안은 후대에 영구히 남길 만한 업적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문집에 남아 있는 정문은 대부분 임진왜란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정문이 ‘성공적 외교의 증거’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청병(請兵)과 변무(辨誣)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문이 사신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

는 점이다. 정문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예부에서도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정문을 당시 현안을 잘 처리하려는 사신의 고민과 최선의 결정이 담겨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2. 9. 18.

심사일 2022. 10. 24.

게재 확정일 2022. 11. 23.

주제어(keyword) 정문(呈文, Jeongmoon), 청병(請兵, Request an army), 예부(禮部, Yeboo), 임진왜란(壬辰倭亂, Imjin War)

## Abstract

### A Study on Diplomacy with China in the Joseon Dynasty and Utilization on Jeongmoon(呈文)

Kim Dong-geon

After arriving in Beijing and offering the Pyojamoon (表咨文), the Joseon envoys asked for answers to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ir visit, such as Chaekbong (冊封), Byeonmoo (辨誣), and Sa-eun (謝恩), and carried out activities to resolve various misunderstandings and seek understanding with China. These requests were often made through Jeongmoon (呈文). Jeongmoon originally refers to public documents submitted by ordinary people to government offices or by lower-level institutions to higher-level ones. Jeongmoon in this study refers to documents submitted by Joseon envoys dispatched to China to express the opinions of Joseon to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Yebu (禮部) on the Chinese side, and to pursue diplomatic interests.

Jeongmoon describes specific demands from the Joseon side, including matters that are not appropriate to be mentioned in Pyomoon (表文) or Jamoon (咨文) but need to be informed to and obtained cooperation from the Qing. Various variables that occurred after the envoy arrived in Beijing and the ne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udden request of the Qing led to writing and submission of Jeongmoon. The significances of the Jeongmo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writing of the Jeongmoon (呈文) itself is evidence that the writers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literary power, and by showing this to the writers of Qing, they secured an opportunity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in foreign countries. The concerns of the envoys who had the responsibility of 'honoring the country with sentence (以文華國)' along with the hope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diplomatic issues were summarized in Jeongmoon.

Second, the successful diplomatic achievements that were obtained in difficult situations were worthy of being left permanently to the future generations. Most of the Jeongmoons remaining in the literature are those written during the Imjin War, showing that the existing Jeongmoons is of value as 'evidence of successful diplomacy'.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is confirmed through request for troops (請兵) and resolving a misun-



derstanding (兵部).

Third, Jeongmoon was an effective means to carry out the various requirements of the envoys. Since the submission of Jeongmoon itself implies that a significant problem has occurred, Yeboo were pressured not to overlook the issue mentioned in Jeongmoon. The Jeongmo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ext flattering the Emperor or Yeboo, but as a document containing the envoy's careful consideration and best decisions to deal with the current issues successfully.

